

우리나라에서 “道德的 解弛”의 概念과 그 問題點*

盧應源**

논문초록

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道德的 解弛) 현상을 지적해 왔으나 그 대부분이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등 경제전문가의 오류도 적지 않으며, 그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조차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몰이해는 국내적으로 경제상황의 진단과 정책처방에서 혼란을 야기하며, 국제적으로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본고는 보험업계 전문 용어로서의 “모럴 해저드”的 원래 의미와 경제학에서의 그 의미의 확장 및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그 발생조건과 효과 등을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 언론 및 사전들의 誤用 事例를 분석한다.

핵심 주제어 :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감추어진 행동

경제학문현목록 주제분류 : D8, A0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세미나(2001년 3월 22일)에서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및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e-mail: nhoew@cnu.ac.kr

I. 서론

97년 외환위기 이후 언론인, 정치인, 학자 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수없이 지적해 왔다. 그런데 그것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문제를 지칭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최광(1999)은 “일반인들이 용어를 잘못 쓰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전문가로 자처하는 학자와 경제관료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또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상을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책의 진단과 처방에서 혼동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가 되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용어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정책 담당자나 언론인들이 “도덕의 타락”이나 “도덕 불감증”으로 잘못 받아들인다면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현실 경제문제 인식과 정책처방에서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의 정확한 의미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Ⅱ절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서구에서 도덕적 해이의 원래 개념과 그 확장과정, 그리고 그 개념과 도덕성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Ⅲ절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관한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그것의 발생 조건, 타개 방안 및 한계 등을 염밀하게 설명한다. 제Ⅳ절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및 사전 등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 개념의 오용사례를 분석하고, 제Ⅴ절에서 맺는다.

II. “도덕적 해이”의 개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는 용어는 경제학 저서나 언론매체에서 주로 “도덕적 해이”로 번역되고 있으나, 국어사전이나 보험론 저서에서는 “도덕적 위험”이나 “도덕적 위태”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용어는 원래 보험업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이나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험업에서의 원래 의미와 그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보험업에서의 원래 의미

보험업에서 “모럴 해저드”는 물리적(physical) 해저드, 정신적(morale) 해저드 등과 더불어 “해저드”(hazard)의 한 종류이다. “해저드”的 사전적 의미는 위험(risk) 또는 그 위험의 원천(source of risk)이며, 보험업에서는 “화재나 기타 사고 등 損因 (peril)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손실의 정도를 증대시키는 조건 내지 상태(condition)”를 말한다(Lipman Company, 1997; 방갑수, 1999, pp. 15~16). 우리나라 보험론 교재에서는 이것을 “위태”(危殆) (김두철 외, 1997, pp. 4~5), 위험한 상태를 의미하는 新造語로서 “위태”(危態) (방갑수, 1999, pp. 15~16) 또는 “위험 요소”(박상범, 1999, p. 28)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위험 및 안전 관련 법률들¹⁾에서는 대부분 “위해”(危害)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통상 “도덕적 해이”로 번역되어온 “moral hazard”라는 용어는 “도덕적 危害” 또는 “도덕적 危態”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고에서도 보험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도덕적 위해”라 표현할 것이다.

보험업에서 “도덕적 위해”(moral hazard)는 “보험사의 손실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직(dishonesty)과 같은 사람의 습성이나 행동”(Lipman Company, 1997), 또는 “어떤 損因의 발생을 통해 손실 가능성을 유발 내지 증가시키는 개인의 주관적·심리적·정신적 특성”(방갑수, 1999, p. 16)으로 정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보상금을 타기 위해 防火처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형태나 사고 시점을 허위로 변경함으로써 非보험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사기행위를 하거나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횡령하는 행위나 성향을 말한다.²⁾ 따라서 도덕적 위해는 단순히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범죄행위로서 고도로 지능적이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범에 의한 범죄가 많다는 일반적 특징이 있다”(조수옹,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소비자보호법, 건축법, 경비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재채취법, 공동주택관리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2) 99년도 우리나라 보험사기는 3876건에 총 442억 7300만 원에 달하며, 유형별 건수를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1849건(47.7%),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을 하는 ‘보험계약 조작’이 843건(21.7%), 피해자와加해자를 바꿔치기 하는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458건(11.8%), 고의보험사고 유발 285건(7.4%) 등이다(『동아일보』, “‘국감자료’ 보험사기 IMF 이후 매년 급증,” 2000. 10. 16).

1993, p. 65). 그리하여 서구사회에서 보험사 직원이 개인의 도덕적 위해를 이유로 그의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한다면 그 직원의 행위는 中傷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LOB, 2001).

이러한 도덕적 위해 현상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 총액은 실제 금전적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손해 배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 원칙이 적용되는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방화 같은 도덕적 위해는 발생하지 않는다(조수웅, 1993).

보험업에서 도덕적 위해 이외의 위해로서 정신적 위해(morale hazard) [또는, 심리적 위해(psychological hazard)]가 있는데, 이것은 보험가입을 통해 손실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손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하게 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말한다.³⁾ “그것은 보험에 들어 있어. 그러니 신경 쓰지마” (Inforonet, 2000)라는 성향이 전형적인 예이다.⁴⁾

2. 경제학적 분석에서의 의미

오늘날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라 부르는 것은 상술한 바 보험업에서의 원래 의미(방화 같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위해” 개념에 가깝다. 이러한 轉義과정의 중간단계로서 보험시장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과정을 먼저 살펴보자.

(1) 보험시장 분석에서의 도덕적 해이 개념

moral hazard에 관한 염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처음으로 제시한 문헌으로 알려진 Arrow (1963, p. 202)에서 그것은 “보험이 [보험가입자의 행위]동기에 미치는 영향”

3) 여기서 InfoNet (2000)이나 Lipman Company (1997)는 “…不注意”를, 방갑수 (1999)는 “…不注意한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부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부주의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4) 보험업에서 위해(hazard)에는 그 외에도 “물리적(또는 물적) 위해”(physical hazard)와 “법적 위해”(legal hazard) 등이 있다. 전자는 위험한 상황의 물질적(material), 구조적 및 조작적(operational) 특성을 말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물리적 위해는 건축물 유형, 그것이 위치한 도시의 보호율(protection rating), 화재를 전염시킬 수 있는 다른 구조물에의 노출정도, 점유유형 등 4대 요인에 따라 분석된다. 후자는 손실의 가능성이나 규모를 증대시키는 법원의 조치(actions of court)를 말한다(Lipman. com, 1997).

(the effect of insurance on incentives)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는 아주 간명하나 다소 추상적이므로, 그는 “자기 집이나 회사에서 화재의 突發을 개인이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화재의 가능성은 부주의에 의해 다소 영향을 받으며,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나 방화도 물론 화재를 일으킨다”(밑줄 추가)고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Arrow가 설정한 moral hazard의 개념은 보험업에서의 본래 의미의 “정신적 위해”인 부주의를 주로 하되 “도덕적 위해”인 방화도 극단적인 경우로서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후 보험시장의 도덕적 위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부주의” 부분만을 다루었다.⁵⁾ Shavell(1979, p. 541)은 도덕적 위해를 “보험의 손실보상(insurance protection)이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인의 동기를 변화시키는 경향”이라 정의하며, Varian(1992, p. 455)의 최근 교재에서도 도덕적 위해는 주로 “보험증권의 구매자가 적절한 수준의 주의(appropriate level of care)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Pauly(1974, p. 45, p. 48)는 이러한 부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을 한 단계 더 파고 내려가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사고방지활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것, 또는 그 때문에 사고방지활동을 하여도 보험료가 불변인 것을 도덕적 위해의 본질로 파악한다.

따라서 보험시장에 관한 경제분석에서 “도덕적 위해” 개념은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업에서의 본래 의미의 “도덕적 위해”보다 “정신적(morale) 위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확장 및 일반화 : “감추어진 행동”

도덕적 위해 문제는 보험시장뿐만 아니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보험의 요소를 내포한 계약 관계가 등장하는 노동시장, 제품시장 및 자본시장 등에서도 널리 발생한다(Arnott and Stiglitz, 1986, p. 1).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위해 문제를 분석하는 모형이 1970년대 초에 수리모형으로 정식화된 이후 이들 다른 분야들에 적용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本人-代理人 관계를⁶⁾ 다루므로 본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5) 그리하여, 최광(1999) 같은 경제 전문가가 방화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보험학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필자 역시 이 글을 쓰면서 이 점을 알게 되었다.

6) 본인-대리인 관계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업사회인 현대사회에서 널리 발견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전문가로부터 거래(계약)를 통해 획득하는데, 변호사의 법

model)이라고도 불린다.

『Palgrave 경제학 사전』에 수록된 Guesnerie(1987, p. 646)의 해설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도덕적 위해란, 대리인의 행동과 확률적 요인(states of nature)의 공동작용으로 나타나는 계약의 성과 내지 결과(outcomes)가 언제나 관찰 가능한 통상적인 본인-대리인 관계일 경우, “계약 당사자들 중의 일방이 취하는 어떤 행동이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publicly observable) — 즉,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관찰 가능 —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상술한 Pauly(1974)의 정의, 즉 보험가입자의 사고방지활동을 보험회사가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대리인 관계로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당사자(특히, 대리인)의 행동의 공개적 관찰 불가능성을 도덕적 위해라 정의하기도 하지만, Arrows(1963)처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대리인의 특정한 행동 — 즉,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감시)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바로 그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보다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하는 것 — 을 도덕적 위해라 부르기도 한다. 후술할 이준구(1998)나 『Palgrave 경제학 사전』에 수록된 Kotowitz(1987, p. 549)의 정의가 그 예이다. Kotowitz는 도덕적 위해를 “불확실성과 계약의 불완전성 내지 제약성 때문에 경제 주체가 자기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손실(이득)을 전부 부담(향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끼치는 해를 무릅쓰고 취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는 도덕적 위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좀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래 3절의 분석에서 확인될 것이다. 여기서 행위의 관찰 불가능성은 계약의 불완전성을 야기하는 한가지 요인이며, 계약의 불완전성 때문에 자기행동의 결과를 전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소위 행위의 외부성이 발생하고, 그 결과로 대리인은 자신에게 더 유리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률서비스, 의사의 의료서비스, 교사의 교육서비스, 전문 경영인의 기업경영 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전문가(변호사, 의사, 교사, 경영자)는 대리인이고 그 고객(의뢰인, 환자, 학생 또는 학부모, 주주)은 본인이다.

이 이외에도, 본인-대리인 관계는 업무상 위임이 이루어지는 기업이나 관료조직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급여구조, 임원의 보수구조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도덕적 위해 모형이 활용된다. 또한, 은행대출에서 대출을 신청한 기업은 대리인이고 대출해주는 은행은 본인이며, 은행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에서는 은행이 대리인이고 정부가 본인이다. 최근에는 은행규제 및 보다 광범하게 금융규제,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진단에서도 도덕적 위해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요컨대, 현대적 의미의 moral hazard는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것” 또는 그 결과로 “(이 사실을 알고서) 대리인이 본인보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rrow(1985)는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도덕적 위해에 대하여는 보험업의 전문용어인 “도덕적 위해” 대신 “hidden action” (숨은 행동, 또는 감추어진 행동)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대리인의 행동은 그 자신만 알고 타인(본인 등)은 알지 못하므로 (본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추어진 행동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제3항 참조).

본인-대리인 관계 이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본인이 없이 대리인만 다수 존재하는 조합(partnership)을 들 수 있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일정한 행동을 서로 관찰할 수 없다면 그 분야에서 무임승차 행위가 발생한다. Arrow(1985)는 본인-대리인 문제의 예로서 명료하지는 않지만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torts)도 그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가해 운전자가 대리인으로서 그의 注意 노력의 정도는 관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본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Kotowitz(1987, p. 549)는 범죄행위가 그 본성상 “감추어진 행동”的 범주에 속하며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기행동의 결과를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도덕적 해이의 일종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도덕적 위해의 한 속성인 “감추어진 행동”으로써 도덕적 위해를 새로이 정의하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개념확장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통상적인 도덕적 위해는 관찰 또는 감시의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자(대리인)가 감추거나 은폐하려고 하지 않는 것임에 반해, 범죄행위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대리인 관계에서는 관찰하지 않는(그리하여, 계약되지 않은) 대리인의 행동을 본인이나 제3자가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음에 반해, 범죄행위일 경우 우연히 관찰되더라도 조사 를 받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감추어진 행동”이라는 용어도 적절한 표현은 아님을 알 수 있다(아래 각주 8 참조).

(3) 한국 외환위기와 도덕적 해이

한국의 1997년 외환금융 위기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나(신상기, 1998 참조), 이인권(1998), Krugman(1998) 등은 기업(특히, 재벌)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⁷⁾ 이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여기서는 도덕적 해이 개념의 전형적 예시로서 거기서 거론되는 도덕적 해이의 내용을 살펴보자.

국제은행들이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대출하면서 한국정부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암묵적 보증이 있다고 믿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과다하게 대출하는 행위를 국제은행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물론, 그 이면에는 국내은행들과 국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대응하고 있다. 국내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란 관치금융에 의한 정부의 묵시적 보증 및 대마불사 관례에 입각하여 재벌들의 위험한 투자에 대해 무리하게 대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내 대기업과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란 역시 같은 요인에 입각하여 위험한 투자계획을 감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감추어진 행동”과 “감추어진 지식”的 문제

“감추어진 행동”的 문제와 대비되는 중요한 정보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감추어진 지식”(hidden knowledge) 또는 “감추어진 정보”(hidden information)의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조차 양자를 혼동하기도 한다(예, 정갑영, 2000). 이것은 거래(또는 계약) 이전에 거래 당사자의 일방(정보 보유자라 함)이 거래 대상이 되는 재화(및 서비스)의 품질 · 특성 · 유형(type) 등을 잘 아는 반면, 타방(정보 非보유자라 함)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특성이 다른 이 재화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보 비보유자들은 시장에서 그것들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예, 동일한 가격을 지급)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일(평균적) 수준보다 품질이 우수한 재화를 가진 정보 보유자들은 그 조건으로 거래하기보다 시장에서 탈퇴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된다. 그들이 탈퇴하고 나면 정보 비보유자들은 더욱 질이 나쁜 재화들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불리한 선택”(adverse selection) 또는 “逆선택” 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역선택 개념도 보험업에서 유래하였다. 의료보험의 경쟁시장에서 제공되는 경우, 의료보험 시장에서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 특성(예, 연령, 성별, 등)이 동일한 집단의 개인들에 대해 보험회사는 그들의 건강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정보 비보유자이며, 각 개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잘

7) DeLong (1998), Chang (1998) 및 Walter (1999)는 이러한 도덕적 위해론을 반박하고 있으며, Krugman (1999) 역시 종전의 도덕적 위해론을 버리고 자산효과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알고 있으므로 정보 보유자이다. 이제,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한 질환에 대해 소정의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의료보험을 생각해 보자. 평소 건강하여 별병의 가능성이 낮은 개인은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보는 반면, 병약하여 자주 병에 걸리는 개인은 그 보험료가 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한 개인들은 이 보험을 구매하지 않게 되며, 그 나머지 병약한 개인들만 구매할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그 보험을 구매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극단적으로는 보험시장 자체가 괴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데, Akerlof(1970)는 중고차 시장이 괴멸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잘 알지 못하는 바가 상대방의 행동이면 “감추어진 행동”이며, 그것이 상대방의 불변의 특성다면 “감추어진 지식”이다. 현실 경제에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양자를 한꺼번에 다루는 분석모형도 개발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감추어진 행동”에 국한하기로 한다.

4. “도덕적 위해”의 도덕성 문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위해를 부도덕한 행위, 도덕 불감증 등의 의미로 잘못 사용하는 예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러한 혼동의 원천은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의 확장 및 변천과정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도덕적 해이 개념의 부도덕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 그 개념 자체의 이해에도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부주의의 부도덕성 문제

보험업에서의 본래 의미의 도덕적 위해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점은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도덕적 위해, 즉 “감추어진 행동”은 보험업에서의 본래 의미의 “정신적 위해” 및 그 확장을 지칭하는데, 그것도 부도덕한가?

Arrow(1985)는 “화재보험은 注意의 유인을 둔화시키며, 심지어 방화의 유인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위해’의 어원”(p. 1185)이라 지적하고, 의료보험도 “도덕적 합의는 적지만,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경우

에 비해 과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유인을 일으킨다”(p. 1185, 밑줄 추가)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rrow는 사고방지 노력의 둔화나 과다한 의료서비스 청구행위가 아주 부도덕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정도는 약하나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도덕적 위해에 미약하나마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우선, 경제학에서 다루는 도덕적 위해는 그 내용상 보험업에서의 “정신적 위해”(부주의)에 해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일찍이 Pauly(1968)는 “보험에서 ‘도덕적 위해’의 문제는 도덕성(morality)과는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으며, 정통적 경제분석 도구로 분석될 수 있다”(p. 531)고 보고, “사람들이 보험가입 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도덕적 배신행위(moral perfidy)의 결과가 아니라 합리적 경제적 행위의 결과”라 지적한 바 있다. 그 이유로서 보험가입자에게 추가적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0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더라도 그 비용이 그 보험의 모든 가입자들에게로 분산되므로 한 개인이 그 사용을 절약할 유인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Guesnerie(1987, p. 646)도 “‘도덕적 위해’는 부적절한(unfortunate) 윤리적 함의를 띠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통상 전형적인 효용 極大化者로 설정되는 限‘감추어진 행동’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⁸⁾ Friedman(2000, p. 66)도 “도덕성과 어떤 관계를 가진 듯한 인상을 주므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현대 독자들에게는 오해를 일으킨다(misleading)”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수용하는 듯, 최근 해외 경제학 교재들은 “moral hazard”를 “hidden action”이란 용어로 점차 바꾸어가고 있다.⁹⁾

8) “원손이 하는 일을 바른 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에서처럼 “감추어진” 것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말 번역어 “감추어진”(또는 “은폐된”)이란 용어 역시 “도덕적으로 나쁜” 함의를 띠고 있다. 불필요한 부정적 함의가 없는 용어로는 “밝혀지지 않은 행동”이 더 적절할 것이다. 사실상, 계약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이 단지 관찰되느냐 않느냐(감추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 관찰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리하여, Guesnerie(1987, p. 646)는 “감추어진 행동이라는 용어는 아이디어는 올바로 전달하지만 올바른 뉘앙스를 전달하지는 못하므로 ‘입증되지 않는 행동’(unverifiable actions)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미시경제학 교재 Varian(1988: 제2판)의 제8장(정보경제학의 문제들) 제4절 제목은 Moral hazard였으나, 제3판(1992) 제25장(정보) 제4절(제5절) 제목은 “hidden action: 독점(경쟁)

그런데 Pauly나 Guesnerie는 도덕적 위해가 도덕성과 무관한 근거를 그것이 합리적 경제행위라는 데서 찾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이기적”을 의미하므로, 이들은 결국 “도덕적 해이는 이기적인 행위이므로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¹⁰⁾ 그러나 도덕적 위해를 부도덕하다고 질타할 수 없음은 아래와 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현대사회에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개인이 자신의 私的 이익을 추구하는 것, 즉 합법적 이기적 행동은 각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 등 경제주체의 합법적 이기적 경제행위를 도덕적이라고 칭송하지는 않을지라도 부도덕하다고 비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위 첫째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은 스스로 합법적 이기적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도 능히 합법적 이기적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¹¹⁾ 따라서 누가 이기적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배신”이라거나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관점에서는 도덕적 위해를 도덕적

시장의 해”로 바뀌었으며 본문 중 한 예시에서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위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Katz and Rosen(1991)의 제15장(비대칭적 정보) 제3절 제목도 “Hidden Action”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Mas-Colell et al. (1995) 제14장(본인-대리인 문제) 제2절 제목은 “Hidden Action”(Moral Hazard), 전문적 저서인 Hirshleifer and Riley(1992)의 제8장(정보의 비대칭성과 계약설계) 제1절 제목도 “Hidden action (“moral hazard”) and contract design”로서 hidden action과 moral hazard를 병기하되 후자를 괄호 안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미시경제학 교재로서 이준구(1998)에는 제21장(정보경제이론) 제5절 제목이 “도덕적 해이”로 되어 있고(제1절에서 “감추어진 행동”을 언급하고 있음), 이는 강태진 외(1966)의 제20장과 서승환(1995)의 제21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김영세(1998)에도 “제4편 도덕적 해이와 계약”만 등장하며, 전문 저서인 이영환(1994)에는 제8장(주인-대리인 문제의 분석) 본문 중(p. 368)에 “주인-대리인 문제”를 “도덕적 해이 문제” 또는 “감춰진 행동의 문제”라고도 칭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10) Pauly(1968)에 대한 논평문에서 Arrow(1968, p. 221)는 가룟 유다의 배신행위를 예로 들어 합리적 경제행위와 도덕적 배신이 서로 배타적인 범주가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베커(G. Becker, 1968)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범죄행위(criminal activity)도 개인의 합리적 행동으로 설명된다. 즉, 범죄행위는 합리적인 행동이면서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한 행위이다.
- 11) 이 점은 경기자들의 합리성(이기성)이 공유지식(common knowledge)이라는 개념이론의 기본 가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가정은 경기자가 상대방도 합리적(=이기적)이라는 것을 알며, 이러한 자신의 인식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상대방의 인식 역시 자신이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자체도 상대방이 안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배신의 결과로 보지 않는 Pauly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위해(부주의)를 일으키는 이유는 상당한 금전적 및 정신적 비용이 드는 사고방지활동을 하여도 보험회사가 그것을 관찰하여 고려해주지 않고 아예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용이 드는 일(사고방지행위)을 그저(공짜로)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칭송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덕하다고 부르기는 곤란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본인-대리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약속 위반의 도덕성 문제

유명한 국내 학부교재 『미시경제학』(1998)에서 이준구 교수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동”(p. 646)을 도덕적 해이로 정의한 다음, 최광(1999)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뜻에서 ‘도덕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다.”(pp. 646~647)고 말하고 있다.

만약 위 인용문에서처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배신행위이며 이 대리인은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런 배신행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비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도덕적”이란 표현을 쓰는 것 역시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리인이 과연 그러한 약속을 하기는 하는가라는 점이다. 여기서 “약속”的 대상이 되는 것은 대리인의 “(최선의) 노력 또는 행위”인데 그 준수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없다고 가정하면(확인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음), 비록 “약속”이라 일컬더라도 그것은 양당사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의미의 “약속”이 아니라 대리인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결심 내지 다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을 이와 같이 “다짐”으로 해석하면, 대리인의 (경제적) 합리성이란 그의 다짐이 어떠하든 주어진 계약조건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수준

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준구 교수의 설명은 대리인이 상술한 바와 같은 다짐을 스스로 하고서도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 기만적이고 비양심적인 인간이라 상정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한 대리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강변함은 무리이다.¹²⁾

III. “도덕적 해이”의 경제적 분석

본절의 목적은 도덕적 해이가 어느 경우에 어떻게 발생하며 또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를 단순한 경제모형을 통해 염밀히 설명함으로써, 위 II절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 개념을 소개하는 데 있다. 이 모형은 고용계약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일어나는 본인-대리인 문제를 분석한다.¹³⁾ 여기서 기업의 소유주는 본인이며 전문적 생산기술을 보유한 근로자는 대리인이다.

1. 기본 가정

생산량 x 는 대리인의 노력수준(e)과 기타 확률적 요인(s)에 의해 달라진다.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수준은 $e_i = i$, $i = 1, 2, 3, 4$ 의 4가지, 그리고 확률적 요인은 s_1, \dots, s_5 의 5가지 값을 취하고 각 상태의 확률은 $\pi(s_i)$ 이며 노력수준별 상태별 산출량 $x = x(e, s)$ 는 <표 2>와 같다고 하자:

<표 2>의 제1행에서 대괄호 안은 각 상태의 확률 $\pi(s_i)$ 이다. 이 표에서 보듯, 노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확률적 상황이 s_1 쪽에 가까울수록 산출량은 많아지지만, 확률적 요인이 작용하므로 산출량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노력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없는 설정이다.

12) 사실, 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같은 행위가설은 도입하지만,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의 내적 심리적 다짐(결심)에 관해서는 통상 어떠한 가설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인이 주어진 계약조건하에서 자기 스스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는 적어도 자기 기만적인 인간은 아니게 된다.

13) 엄밀한 모형은 최근의 서베이 논문 Dutta, P. K. and R. Radner(1994)를 참조하라. 이하의 모형(단, 제4절 제외)은 N. Strong and M. Walker(1987, pp. 167~172)에 소개된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표 2> 확률적 생산함수 $x = x(e, s)$

상태 노력 \ 노력	s_1 [0.3]	s_2 [0.3]	s_3 [0.2]	s_4 [0.1]	s_5 [0.1]	기대치
$e_1 = 1$	55,000	40,000	40,000	40,000	40,000	44,500
$e_2 = 2$	55,000	55,000	40,000	40,000	40,000	49,000
$e_3 = 3$	55,000	55,000	55,000	40,000	40,000	52,000
$e_4 = 4$	55,000	55,000	55,000	55,000	40,000	53,500

생산물의 가격을 1로 두면 생산량은 그대로 생산액이 되며, 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w 로 표기하면 본인의 순수입은 $x - w$ 이다. 본인은 위험중립적이며 효용함수

$$V(x, w) = x - w$$

를 갖고, 대리인은 위험기피적이며 효용함수

$$U(w, e) = \sqrt{w} - (e + 3)^2 \quad (1)$$

을 갖는다고 하자.¹⁴⁾ 대리인은 노동시장에서 일함으로써 최소한 100의 기대효용(유보효용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자.

끝으로, 대리인은 자신의 노력수준을 알지만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한다는 소위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를 가정하자.¹⁵⁾ 이것은 대리인의 “감추어진 행동”을 도입한 것으로서 아래에서 보듯 도덕적 위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요인이 된다. 확률적 요인은 물론 누구도 관찰하지 못하지만 산출량은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관찰 가능하다고 하자.

14) 노력수준 변수를 $\tilde{e} = e + 3$ 으로 변환하면, 대리인의 효용함수는 $U(w, \tilde{e}) = \sqrt{w} - \tilde{e}^2$ 로 간소화된다.

15) 영어 용어가 symmetric(대칭적)에 반대되는 “asymmetric”이므로 통상 “비대칭적”이란 말로 번역하며, 대리인의 노력수준에 관한 정보에 관한 한, 대리인은 그것을 아는 반면 본인은 알지 못하는 대등하지 못한 사정을 “비대칭적”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말로 “정보偏差” 또는 “偏差 정보”로 번역하면 더욱 알기 쉬워 보인다.

2. 예비적 분석

(1) 가상적인 완전 정보하의 최선 계약

위에 상정한 모형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순전히 비교 대상을 미리 마련할 목적으로 본인이 대리인의 노력수준을 관찰할 수 있다는 소위 “완전 정보”(perfect information) 상황을 가정하고서 어떤 계약이 가능하며 어떤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노력수준을 관측할 수 있다는 사실의 의의는 노력수준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떤 노력수준 e_i 를 투입할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w_F = \begin{cases} w_0, & e = e_i \text{ 일 때} \\ 0, & e \neq e_i \text{ 일 때} \end{cases}$$

형태의 계약으로서 유보효용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계약은 대리인에게 사실상 e_i 의 투입을 강요하므로 “강제성 계약”(forcing contract)이라 불리는 데, 이 계약하에서는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수 없다.

대리인에게 e_3 을 강제할 경우 유보효용을 보장하는 임금은

$$EU(w_0, e_3) = \sqrt{w_0} - 6^2 = 100, \text{ 즉 } w_0 = 18,496 \text{ 원}$$

이어야 하고, 이 때 본인은 $EV(x|_{e_3} - 18,496) = E[\$e_3] - 18,496 = 52,000 - 18,496 = 33,504$ 원의 기대이득을 본다. 같은 요령으로 대리인에게 유보효용을 보장하면서 e_1 이나 e_2 또는 심지어 e_4 를 강제할 경우 본인의 기대이득은 이보다 더 적어지므로,¹⁶⁾ 본인은 e_3 을 강제하는 계약

$$\hat{w}_F = \begin{cases} 18,496, & e = e_3 \text{ 일 때} \\ 0, & e \neq e_3 \text{ 일 때} \end{cases}$$

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러면 대리인은 이 계약하에서 e_3 이 가장 유리(사실상, 간신히 유보효용을 획득할 뿐이지만, 다른 노력수준을 투입할 경우에는 임금이 0임) 하므로 이 노력수준을 투입하게 된다. 이것은 가상적인 완전정보 상황하에서 가능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이므로 “최선의 계약”(first-best contract)이라 부른다.

16) 노력수준 1을 강제할 경우 본인은 13,456원을 지급하고서 기대효용 31,044를 얻으며, 노력수준 2를 강제할 경우 15,625원을 지급하고서 33,375를 얻는다. 노력수준 4를 강제할 경우, 22,201원을 지급하고서 31,299를 얻는다.

(2) 노력수준 관찰 불가능시 : 고정급과 도덕적 위험

이제, 본인이 대리인의 노력수준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를 분석하되, 본인과 대리인간의 이해갈등을 보이기 위해 고정급 임금체계 \bar{w} 를 도입하는 경우를 고찰해보자.

고정급 \bar{w} 가 대리인에게 유보효용 이상을 보장, 즉

$$EU(\bar{w}, e_1) = \sqrt{\bar{w}} - 16 \geq 100 \text{ 또는 } \bar{w} \geq 116^2 = 13,456 \text{ 원}$$

이라면, 대리인은 일단 이 계약에 동의할 것이며 낮은 노력수준을 투입할수록 효용이 높아지므로 최저 수준의 노력 e_1 을 투입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리인에게 노력수준과 무관한 급여체계(고정급)를 적용하면 대리인은 선택 가능한 노력수준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그리하여, 본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e_1 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를 것을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라 부른다.

이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이러한 행동을 예상하므로 $\bar{w} = 116^2 = 13,456$ 원으로 설정함으로써 대리인에게 유보효용을 보장하면서 자신은 최대의 기대이윤

$$EV(x - \bar{w}) = E[x|e_1] - \bar{w} = 44,500 - 13,456 = 31,456 \text{ 원}$$

을 번다.

3. 산출량 관측가능시 차선의 계약

이제, 위 1에서 설정한 상황, 즉 본인이 대리인의 노력수준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불완전하게나마 전달해주는 대리변수로서 산출량을 별다른 비용 없이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기로 하자.

산출량이 관찰 가능하면 이것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으므로, 이제 산출량 조건부 급여체계

$$w_s = \begin{cases} w_h, & x = x_h = 55,000 \text{ 일 때} \\ w_l, & x = x_l = 40,000 \text{ 일 때} \end{cases}$$

를 도입하자. 대리인의 노력수준 자체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는 현행 상황에서 본인의 과제는 자신의 기대이득을 극대화하는 노력수준을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투입하도록 w_h 와 w_l 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에게 4가지 노력수준 중 어느 것을 투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

장 유리한가는 각 경우를 분석하여 본인의 기대이득을 비교해 보는 방법밖에 없다. 대리인에게 $e_2=2$ 를 투입하도록 유도하면서 본인의 기대이득을 극대화하는 계약은 다음 수학적 문제를 풀어서 구한다:

$$\text{극대화 } EV(w_S) = 0.6(55,000 - w_h) + 0.4(40,000 - w_l)$$

$\{w_S\}$

$$\text{제약 } EU(w_S, e_2) \geq 100 \quad (2)$$

$$EU(w_S, e_2) \geq EU(w_S, e_1) \quad (3a)$$

$$EU(w_S, e_2) \geq EU(w_S, e_3) \quad (3b)$$

$$EU(w_S, e_2) \geq EU(w_S, e_4) \quad (3c)$$

대리인에게 유보효용을 보장하는 제약 (2)는 (대리인의 계약) 참여제약 또는 개인적 합리성 (individual rationality) 조건이라 부르며, (3)은 대리인이 다른 노력수준에 비해 e_2 를 선택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유인정합성 (incentive compatibility) 조건이라 부른다.

이 제약하의 극대화 문제를 풀면, 그 해는

$$\hat{w}_S = \begin{cases} \hat{w}_h = 18,769, & x = 55,000 \text{일 때} \\ \hat{w}_l = 11,449, & x = 40,000 \text{일 때} \end{cases}$$

이며, 대리인은 100의 기대효용을 얻고 본인은 $EV(x|_{e_2} - \hat{w}_S) = 33,159$ 를 얻는다.

이상과 같은 요령으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e_1 , e_3 및 e_4 를 투입하도록 하면 본인의 기대이득은 각각 31,044, 33,020 및 29,778임이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e_2=2$ 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가상적인 완전정보 하에서의 최선의 계약 w_F 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불완전 정보하의 이 \hat{w}_S 를 차선의 계약 (second-best contract)이라 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노력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을 경우 고정급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본인은 최선의 계약에 비해 2,048 (=33,504-31,456)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대리변수인 산출량이 비용 없이 관찰 가능하다면 그 손실은 345 (=33,504-33,159) 원으로 줄어든다(그 차이인 1,703원은 산출량 정보의 가치라 볼 수 있으며, 산출량 관찰비용이 이보다 높다면 본인은 이를 관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손실액이 도덕적 위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상기 각 상황별로 대리인이 본인과 상술한 계약을 일단 체결하고 나면, 어떤 계약체계하에서도 대리인은 이상 더 “불성실”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그러할 가능성을 본인이 미리 감안하여 대리인에게 기껏해야 유보효용을 보장하는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약을 설계하여 놓았기 때문이다.

4. 대리인의 위험중립성과 도덕적 위해의 해소

이제, 대리인의 효용이 소득에 관해 위험중립적인 경우를 분석해 보자. 구체적으로, 대리인의 효용함수가 (1) 대신

$$U(w, e) = 0.01w - (e+3)^2$$

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자.

(1) 가상적 완전정보하 최선의 계약

위의 2절 1항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분석하면, 본인은 $e_4 = 4$ 을 강제하는 강제성 계약을

$$\hat{w}_{Fn} = \begin{cases} 14,900, & e = e_4 \text{ 일 때} \\ 0, & e \neq e_4 \text{ 일 때} \end{cases}$$

로 설정할 때 최대의 기대이득

$EV(x|_{e_4} - 14,900) = E[x|_{e_4}] - 14,900 = 53,500 - 14,900 = 38,600$ 원을 뺀다. 대리인은 물론 유보효용 수준인 100을 얻는다.

(2) 산출량 관측가능시 차선의 계약

위의 3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본인이

$$\hat{w}_{Sn}(\theta) \equiv \theta \hat{w}_{Sn1} + (1-\theta) \hat{w}_{Sn2}, \quad \theta \in [0, 1] \quad (4)$$

$$\hat{w}_{Sn1} = \begin{cases} \hat{w}_h = 16,200, & x = 55,000 \text{ 일 때} \\ \hat{w}_l = 3,200, & x = 40,000 \text{ 일 때} \end{cases}$$

$$\hat{w}_{Sn2} = \begin{cases} \hat{w}_h = 149,000/9, & x = 55,000 \text{ 일 때} \\ \hat{w}_l = 0, & x = 40,000 \text{ 일 때} \end{cases}$$

를 설정함(多數 解가 존재함)으로써, 대리인으로 하여금 $e_4 = 4$ 의 노력을 투하하며

100의 유보효용을 획득하는 것이 최선이 되도록 할 때 본인은 최대의 기대이득 38,600원을 뺀다.

그런데 이 본인의 기대이득은 완전정보하의 최선의 계약하에서 취득 가능한 기대이득과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theta=7/16$ 일 경우 (4)는

$$\hat{w}_{Sn}(7/16) = \begin{cases} \hat{w}_h = 16,400, & x=55,000\text{일 때} \\ \hat{w}_l = 1,400, & x=40,000\text{일 때} \end{cases} \quad (5)$$

이며, 본인은

$$x = x_h = 55,000\text{ 일 때 } x_h - \hat{w}_h = 55,000 - 16,400 = 38,600$$

$$x = x_l = 40,000\text{ 일 때 } x_l - \hat{w}_l = 40,000 - 1,400 = 38,600$$

을 취득한다. 따라서 계약 (5)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고정된 임대료 $R=38,600$ 원을 지급하고 기업을 임차하여 산출량이 얼마든 그 산출량에서 임대료를 차감한 나머지 ($=x - R$)를 차지하는 소위 임대계약(rental contract)에 해당한다. 이 임대계약하에서 대리인이 노력투입을 증대하면 그만큼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대리인의 도덕적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아울러, 임대계약은 본인이 대리인의 노력수준은 물론, 산출량조차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택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임대료만큼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체결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Holmstrom(1979, p. 74)은 “개인들이 私的으로 취한 행동이 전체적 결과의 확률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서로 위험분담(risk sharing)을 하고자 할 때 도덕적 위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요약한다. 위 경우에서처럼, 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위험중립적이면 위험분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IV. “도덕적 해이” 용어의 오용 사례분석

1. 신문 보도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란 용어가 경제학 교과서에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주요 일간지에서 그 용어가 등장하는 기사건수를 조사해 보면 기사검색이 가능한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무하며, 95년부터 등장하기 시

〈표 1〉 “도덕적 해이” 포함 기사 건수

	90~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10개 종합일간지 소계	0	0	2	1	32	629	529	1,000
평균	0	0	0.2	0.1	3.2	62.9	52.9	100.0
4개 경제일간지 소계	-	-	15	5	23	397	300	1,163
평균			3.8	1.3	5.8	99.3	75.0	290.8
합계	0	0	17	6	55	1,026	829	2,163
평균			1.2	0.4	3.9	73.3	59.2	154.5

주) 종합일간지(경향, 국민, 대한,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경제일간지(내외, 서울, 매일, 한국)

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말부터 갑자기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신문사당 평균 154건(종합일간지는 100건, 경제일간지는 291건)에 이른다.¹⁷⁾

그런데, 이 용례들에서 그 의미는 대체로 다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 | |
|-------------|------------------------------|
| 1) 범죄행위 | 2) 명시적 직무유기 |
| 3) 도덕의식의 해이 | 4) “모럴 해저드”的 올바른 의미(제Ⅱ, Ⅲ절). |

이들 중 처음 3가지는 잘못된 용례에 속하며 (3)의 경우가 가장 많은데, 각각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7) 한국언론재단의 한국종합뉴스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KINDS)에서 “도덕적 해이”란 용어로 종합일간지(1990년 5월부터 기사수록)와 경제일간지(1995년부터 수록)를 검색한 결과이다.

18) 익명의 심사위원은 외국의 신문에서도 moral hazard라는 용어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않은지(그렇다면, 본고의 주장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됨) 조사해 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2001년 6월7일까지의 기간 동안 moral hazard를 검색한 결과 *New York Times*에서는 38건만 발견되었으나, 경제전문지인 *Financial Times*에서는 360건이 발견되었으며 그 연도별 건수는 아래와 같다.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1.1~6.7
13건	32건	98건	53건	108건	66건

*Financial Times*의 360건은 너무 많으므로 그 중 1997년도 32건,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38건의 기사들을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모두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moral hazard의 정확한 의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뉴욕 타임즈』의 38건은 거의 전부 경제 전문가들의 평론 기사였다.

1) 범죄행위 (위법행위)

① “일부 증권사와 투신사는 기관투자가들이 가입한 펀드에 편입돼 있던 대우계
열사 채권을 최대 98%까지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가입한 펀드로 몰래 떠넘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자금을 믿고 맡긴 일반투자자들을 속여 손실을 덤터기 써
운 배신 배임행위 명백한 불법이다. 모럴 해저드가 이 지경에 이른 금융기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1999/08/18(수) 동아일보 사설, “한심한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밑줄 추가)

② “… 공적자금 투입대상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을 앞두고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망하기 전에
일단 쟁기고 보자’는 식으로 횡령 및 불법대출을 통한 커미션 수수 등의 사례가 잇
따르고 있다.”(『동아일보』, “‘도덕적 해이’ 극심 … 잇따른 대형사고 팔짱만”, 2000.
9. 3, 밑줄 추가)

2) 명시적 직무 유기 및 방기

① “… 금융감독 당국에 팽배한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워크아웃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이미 지난해
부터 수차례 지적돼 왔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은 채권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이들을 관리하는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동아일보』, “금융감독당국, 정부의 모럴 해저드도 문책해야,” 2000. 8. 25).

3) 도덕의식의 해이, 도덕 불감증

우리나라에서 “도덕 불감증”이나 “도덕의식의 해이”를 “도덕의 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국어사전에 “해이”란 “정신 자세가 흐트러지고 긴장이 풀려 규율을
잘 지키지 않거나 멋대로 행동하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기강 해
이, 마음 해이, 정신상태 해이” 등이 주요 용례로 소개되어 있다. 종합일간지에서
“해이”라는 용어의 사용 예를 조사해보아도 그 대부분이 “기강 해이, (사회/근무) 분
위기 해이”이며, “(준법/근로) 정신 해이, (안보/근로) 의식 해이, 정신력 해이, 안

보관 해이, (공무원) 태도 해이, (업무) 자세 해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공직/노동) 윤리 해이”도 사용된 예가 있으므로,¹⁹⁾ “도덕 해이”나 “도덕의 해이”라는 말도 사용될 법한데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다.

따라서 “도덕”에 적용된 “해이”를 “도덕의 해이” 대신에 “도덕적 해이”라는 新造語로 부르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런 의미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본고에서 다루는 “모럴 해저드”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 자체로서 잘못된 용례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아래 사례와 같이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거나 합의한다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의 오용에 속한다.

① “은행들의 경우도 모럴 해저드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실대출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모든 손실부담을 기업과 죄없는 국민에게 덮어씌우기에 바쁘다. … 이런 무책임과 도덕적 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하면 …”(1999. 8. 18 『동아일보』 사설, “한심한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밑줄 추가).

또한, 우리 사회에서 도덕의 해이 현상이 1997년의 외환위기 때에 갑자기 출현한 것도 아니며 국내외적으로 “모럴 해저드” 문제가 널리 제기된 후부터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모럴 해저드”를 “도덕의 해이”라는 의미의 “도덕적 해이”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사전, 용어해설 문헌

국어사전²⁰⁾에서는 moral hazard를 “도덕적 위험”으로 번역하며, 그 내용은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이 계약자의 신의 · 성실의 위반에서 보

19) ①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 재계 중진들은 ‘우리사회의 노동윤리가 해이해져가고 있다’고 지적”(『세계일보』, 1996. 6. 15, 10면, “금리 국제 수준으로 인하해야”, 밑줄 추가). ② “선거이후 … 해이해진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중앙일보』, 1996. 5. 3일, 6면, 사설, “‘있을 수 없는 일’의 범람”, 밑줄 추가).

20) 아래 3가지 국어사전의 설명이 모두 대동소이하다: ① 한국어사전편찬회, 『한국어대사전』, 1976, 현문사, ② 한국어사전편찬회, 『최근개정 삼성판 국어대사전: 上』, 1991, 삼성문화사, ③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1991, 어문각.

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이 위험을 본래의 위험과 구별하여 일컫는 말”로 정의한다. 이것은 보험업에서의 원래 개념에 해당하며, 최근 보다 널리 쓰이는 확장된 개념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는 어귀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그리하여, 어떤 행위가 이에 속하는지) 알기 어렵다.

매경(매일경제신문) 인터넷의 경제용어사전에는 “도덕적 해이는 생산성이 높은 쪽이 그렇지 못한 쪽과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전자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감추어진 정보요인을 잘못 끌어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다.

동아(동아일보) 닷컴의 경제용어사전에는 “고용관계 또는 대리관계에서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고용주 또는 의뢰인의 이해에 반하는 부도덕 또는 불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后략)”로 비교적 충실히 설명하고 있는 편이지만, 대리인의 부도덕성이나 불성실성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본래 의미를 다소 왜곡하고 있다.²¹⁾

VI.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덕적 해이”로 부적절하게 번역하여 사용해 온 영어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서구에서도 두 가지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로, 보험업에서의 원래 의미로서 “보험사의 손실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放火, 不正直, 詐欺 등의 사람의 습성이나 행동”을 나타내며 우리나라 보험학 교재에서 “도덕적 위태”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정도를 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도덕의식의 해이”라는 의미로서의 “도덕적 해이”로 표현함은 그 의미를 너무 약화시킨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경제학에서 확장된 의미로서 주로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 행동의 관찰 불가능성” 또는 그 결과 야기되는 바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또

21) 그러나 『동아일보』, 1998년 3월 23일자 25(경제)면 용어해설에서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러 계을리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는 노력수준)을 취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부도덕 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그 명칭도 “hidden action”(감추어진 행동)으로 바꿔 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것을 “도덕적 해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러한 경제학적 의미의 도덕적 위에는 본인이 비용을 들여가며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하면 그 정의상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적·제도적 여건의 개선에 의해 그 행동 또는 그것과 연관된 대리변수의 관찰비용이 인하되어 실제로 관찰하게 된다면 도덕적 위에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구태여 관찰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그것을 완화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도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하는 공동보험제도(co-insurance)나 일정 수준 이하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 공제제도(deductibles)를 도입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 등 제반 불법 및 위법행위들을 그저 “도덕적 해이 = 모럴 해저드”라 부르며 우리 모두가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견 지당한 대책 같지만,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효성이 없다.²²⁾ 고 범서(1996)가 지적하듯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도 이제 개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전통적인 개인윤리적 접근방법보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 윤리적 접근방법이 더욱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불법 및 위법행위의 범람은 법이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로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현상이지, 도덕적 해이라는 말로 바꾸어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가 기본 법질서가 확립된 사회에서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고려하면, 법질서의 확립문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 이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22) 이러한 유형의 예로서, 한국의 과열 사교육 문제 또는 공교육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학부모의 빗나간 교육열을 탓하고 국민들이 학력과 학벌을 추구하는 “졸업장 열병”에 걸려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졸업장 열병」이란 저서를 저술한 Dore(1976)는 그 용어로써 후진국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표현하였으며 “개인의 병적 현상”을 지칭하지 않았으나, 한국에 수입되면서 후자로 이해되고 있다. 졸고(1999, p. 259 및 각주 11) 참조.

■ 참고문헌

1. 강태진 외,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1996.
2. 고범서, “도덕성 회복방안 모색,” 정해창 외, 「가치관의 변동과 도덕성 회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p. 153~199.
3. 김두철 외, 「보험과 위험관리」, 문영사, 1997.
4. 김영세, 「게임이론-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박영사, 1998.
5. 노옹원, “한국 과열 과외교육이 메커니즘과 대책 - 정보·게임이론적 접근,” 「경제발전연구」, 5권 1호, 1999, pp. 247~273.
6. 박상범, 「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1999.
7. 방갑수, 「최신 보험학」, 제5판, 법문사, 1999.
8. 서승환, 「미시경제론」, 흥문사, 1995.
9. 신상기, “한국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경제발전연구」, 4권 2호, 1998. 12, pp. 191~226.
10. 이영환, 「불확실성과 정보의 경제학」, 매일경제신문사, 1994.
11. 이인권 외, 「도덕적 해이의 폐해와 치유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7.
12.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3판, 법문사, 1998.
13. 정갑영, “[정갑영의 풀어쓰는 경제학] ‘레몬시장’과 그레셤의 법칙,” 「매일경제」, 2000. 1. 18 일(<http://my.netian.com/~feelhana/read/lemon0309.htm>).
14. 조수웅, “보험범죄와 그 방지대책,” 「보험학회지」, 41집, 1993, pp. 60~75, 김두철 외 (1997), p. 197에서 재인용.
15. 최 광, “도덕적 해이와 정확한 이해,” 한경, 1999. 4. 27.
16. Akerlof, G.,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9, 1970, pp. 488~500.
17. Arnott, R. and J. E. Stiglitz, “Moral Hazard and Optimal Commodity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9, 1986, pp. 1~24.
18. Arrow, K. E.,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1963, pp. 941~973.
19. ———,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Further Com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8, 1968, pp. 537~539. Reprinted in Arrow(ed.), *Essays in the Theory of Risk-Bearing*, North-Holland, 1971, pp. 220~222.
20. ———, “Agency and the Market,” J. W. Pratt and R. Zeckhauser(eds.), *Agency: The Structure of Business*, 1985. Reprinted in Arrow and Intriligator(eds.), *Handbook of Mathematical Economics*, Vol. 3, North-Holland, 1986, pp. 1183~1195.
21. Becker,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1968, pp. 169~217.
22. Chang, Ha-Joon, “The Hazard of Moral Hazard,” *Financial Times*, Special Report: IMF/World Bank, October 8, 1998.
23. DeLong, B., “East Asia: The True Moral Hazard,” 1998,
http://www.j-bradford-delong.net/OpEd/East_Asia_Moral_Hazard.html

24. Dore, R., *Diploma Disease: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이건만·김성학 역, 『졸업장 열병』, 양서원, 1992.
25. Dutta, P. K. and R. Radner, "Moral Hazard," Ch 26 of Aumann & Hart (eds.), *Handbook of Game Theory*, Vol. II, Elsevier, 1994, pp. 869~903.
26. Friedman, D. D., *Law's Order: What Economics Has to Do with Law and Why It Matte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 66, http://www.best.com/~ddfr/laws_order/laws_order_chapter_6/links/ch_6_66_text_mrlhzrd.htm
27. Guesnerie, R., "Hidden Actions, Moral Hazard and Contract Theory," Eatwell, J. et al (ed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 2, The Macmillan Press Ltd., 1987, pp. 646~651.
28. Hirshleifer, J. and J. Riley, *The Analytics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9. Holmstrom, B.,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Bell Journal of Economics*, 1979, pp. 74~91.
30. InfoNet (New York Independent Insurance Agents Association) :
<http://www.iiaany.com/glossm.htm>
31. IOB (Insurance Ombudsman Bureau), "Rejecting Proposal,"
http://www.theiob.org.uk/digest/r/rejecting_proposals.html, 2001.
32. Katz, M. and H. S. Rosen, *Microeconomics*, Irwin, 1991.
33. Kotowitz, Y., "Moral Hazard," Eatwell, J. et. al (eds.),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 3, The Macmillan Press Ltd., 1987, pp. 549~551.
34. Krugman, P., "What Happened to Asia?" January 1998,
<http://web.mit.edu/krugman/www/DISINTER.html>
35. ———, "Balance Sheet, the Transfer Problem, and Financial Crises," 1999,
<http://web.mit.edu/krugman/www/FLOOD.pdf>
36. The Lipman Company, Inc. <http://www.lipman.com/insurance/businsgloss.htm#hazard>, 1997.
37. Mas-Colell et al., *Microeconom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38. Pauly, M. V., "The Economics of Moral Hazar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8, 1968, pp. 531~537.
39. ———, "Overinsurance and Public Provision of Insurance: The Roles of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8, No. 1, February 1974, pp. 44~62.
40. Shavell, S., "On Moral Hazard Andinsura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No. 4, November 1979, pp. 541~562.
41. Strong, N. and M. Walter, *Information and Capital Markets*, Basil Blackwell Ltd, 1987.
42. Varian,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1992.
43. Walter, A., "Moral Hazard and the Korean Crisis," 『매일경제』, 1999.

The Hazard of Korean Arguments for Moral Hazard

Eungwon Nho*

Abstract

“Moral hazard”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However, the term has often been used inappropriately in Korea to imply “immoral behavior”. It is surprising to find that some of well-known economists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 economic profession make the same errors, and even more surprising to find that some do so when warning against wrong uses of the term.

Misunderstanding of this term may lead to a serious confusion in the diagnosis of economic problem and in the discussion of economic policy, and communication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 causes of such a misconception are not clear. One may note that the term is inappropriately translated into Korean as “slackened morality.” The paper makes clear the meaning of “moral hazard.” First, it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by which its meaning has changed from a jargon in insurance industry to the current version in economics. Second, a simple model of moral hazard is added to show its causes and effects. Third, it shows empirical evidences of the misuses of the term by Korean news papers and dictionaries.

Key words: moral hazard, morale hazard, hidden ac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